

등록번호	환경과-34737
등록일자	2014.11.13.
결재일자	2014.11.13.
공개구분	부분공개(6)

수질보전팀장		환경과장	복지환경국장
조용숙		송연태	11/13 김병규
협 조			

2014년 상반기 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 분석평가 보고



복지환경국
환경과

2014년 상반기

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 분석평가 보고

자율점검업소로부터 제출된 2014년 상반기분 자율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한 분석·평가로 자율점검업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I 현 황

○ 배출업소 현황

구분	폐수	기타수질오염원	대기	소음진동
배출업소	569 (자가 59, 위탁510)	179	9	54
자율점검업소	43		1	

○ 자율점검업소 배출오염물질처리방법별 현황

구 분	계 (총계/금회보고)	대기분야 (총계/금회보고)	수질 (총계/금회보고)	비고
자가처리	6 / 2	1 / 0	5 / 2	
위탁처리	38 / 8		38 / 8	
총 계	44 / 10	1 / 0	43 / 10	

II 관련 규정

-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·점검 규정 제27조~제39조
 -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
 - 발생오염물질 자가처리업소 중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
 -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나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
 - 최근2년내 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적발되지 않은 사업장 등
 - 지정기간 : 3년간 (재지정시 5년)
 -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
 - 연1회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
 - 자율점검 실시후 점검결과를 년1회 제출
 - 자율점검과정에서 시설의 부적정운영 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령 위반사실을 알았을 경우 즉시 중구청 환경과에 신고하고 필요조치를 실시

III 자율점검보고서 분석평가

- 보고서 제출실적 : 대상 10개소중 10개소 제출(제출율 100%)

자가처리업체 : 2개소

- 분석결과

구분	업체수 (생산량)	용수사용량 (m ³ /월)	폐수배출량 (m ³ /월)	슬러지처리량 누계(Kg)	전기사용량 (Kw/월)
자동세차	1(35대/일)	3	7	85	58.5
일반세차	1	2	2	3	2.1

○ 평가결과

- 용수사용량 : 자동세차기 운영사업장의 일일 세차대수는 평균 35대로 발생폐수 처리를 연속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패치식으로 처리하는 일반세차량보다 용수사용량이 현저히 적게 소요됨
- 폐수배출량 : 연속식으로 처리하는 자동세차장의 폐수배출량이 용수사용량보다 2배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양의 차이가 많아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.
- 슬러지처리량 : 자동세차 85Kg, 일반세차 3Kg에 대하여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함.
- 전기사용량 : 전기사용량은 연속식이 훨씬 많음.

위탁처리업체 : 8개소

○ 분석결과

구분	업체수	용수사용량 (L/월)	폐수배출량 (L/월)	폐수위탁량 (L/월)
인쇄출판	8	6274	6299	6299

○ 평가결과

- 용수사용량 : 총8개업체의 용수사용량은 월평균 6,274L(6.3m³)으로 업체당 월평균 0.79m³을 사용하고 있음.
업소별로는 프린트시티가 4.2m³으로 가장 많음
- 폐수배출량 : 실제 사용되는 용수보다 폐수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사용약품이 포함되어 배출되기때문인 것으로 추정됨.
- 폐수위탁량 : 폐수배출량과 폐수위탁량이 동일하므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III

결 론

- 자율점검보고서 제출대상 10개소중 10개소 모두 제출하여 100%의 제출실적을 보임
- 폐수배출시설(자가처리)의 방지시설 운영 검토결과
 - 폐수배출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없음.
 - 자동세차시설은 연속식으로 폐수를 재활용하고 있어 전기사용량이 일반세차장의 회분식보다는 통상적으로 많음.
 - 역전주유소의 경우 폐수배출량이 용수사용량보다 2배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양의 차이가 많아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.
- 폐수배출시설(위탁처리)의 운영 검토결과
 - 사업장별로 발생폐수량의 편차가 많음.
 - 실제 사용되는 용수보다 폐수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배출량에 약품이 포함되기 때문임.
- 우리구는 대부분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소규모사업장이므로 이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사업자 스스로 시설을 점검·관리토록 유도함이 바람직할 것임.

IV

향 후 계 획

-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또는 신규 지정대상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 제도 홍보강화로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: 2014.12.15.한 지정완료.

붙임 사업장별 자율점검보고서 제출현황. 끝.